

#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48호 / 8월 30일

##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평가

### 1. 개요

-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, 중국정부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.
- 해외투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중복되어 있어 심사절차가 복잡하고, 사전심사에 비해 사후심사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또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적절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▲국가계획위, 경제무역위, 대외경제무역부 등 3부처간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며, ▲지방정부가 아닌 중앙부처가 직접 해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, ▲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법규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.

### 2.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

- 2001년 9월 현재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6,513건, 계약액 누계는 118억 달러(이 중 중국측 투자액 79억 달러)였음.

- 업종별로는 무역투자가 39.2억 달러, 제조업생산 투자가 17.6억 달러(그 중 대외가공무역 8.7억 달러), 자원개발 14.3억 달러, 농업 1.5억 달러, 교통운수업 1.3억 달러임.
- 지역별로는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투자가 46.8%, 북미 13.7%, 아시아 11%, 아프리카 9.2%, 남미 7.5%임.

□ 한편, 해외투자 실행액은 1998년에는 4.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, 2001년에는 7.8억 달러로 늘어났음.

- 중국정부도 설비 이전, 자금의 유출입, 인력의 출입국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정과 해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.

### 3. 해외투자 정책의 문제점

□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고는 있으나, ▲해외투자와 관련된 사전심사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중복이 심하고, ▲엄격한 사전심사시스템에 비해 사후관리가 소홀하며, ▲민영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해외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□ 현행 제도상 해외투자를 심사하는 부서는 국가계획위, 경제무역위, 대외경제무역부 등 3개 부처이며, 명목상으로는 각각 일반해외투자, 대외가공무역투자,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해외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.

-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간 업무 중복이 심하고, 권한관계도 불분명함.
- 또한 정부내에 각종 명목의 해외투자 지원기금이 설치되어 있지만, 이를 심사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로 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

하고 있음. (예: 대외무역발전기금대출, 합자합작기금대출, 수출입은행 정책성대출 등)

□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는 중앙부처가 담당하지만, 이를 사후 감독하는 업무는 국제경험이 부족한 지방정부 산하의 경제무역위에서 처리함.

- 따라서 해외투자를 가장한 자산의 해외도피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·감독이 어려움.

□ 중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유기업에게만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,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함.

-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가 국유기업의 그것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르고, 국내적으로도 민영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.

- 특히 정당한 해외투자와 자산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도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함.

#### 4.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개선방안

□ 최근 대외경제무역부 산하 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은 상기와 같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음.

- 해외투자의 사전심사절차와 금액제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, 심사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함.

o 이를테면 국가계획위나 경제무역위는 1,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, 경제무역부는 그 이하의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수 있음.

- 철저한 사후감독을 위해 경제무역부가 해외투자기업으로부터 직접 연례 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재무와 정책결정 등을 파악하도록 함.
-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폐지함.
  - o 그러나 ▲금융거래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제, ▲해외투자 자금원의 불법성 여부 심사, ▲개인의 해외투자한도 제한 등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.
-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확대해야 함.
  - o 2000년 현재 중국은 98개국과 투자보호협정, 6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각각 맺고 있는바, 이는 중국의 교역투자 상대국의 43.9%와 30.5%에 해당함.(\*\*\*)